

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’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 및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이다. (1인 1계좌)

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-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.

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.

제7조 【입금제한】

- ① 이 예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공무원연금 급여, 별정우체국연금 관리단에서 입금하는 별정우체국연금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하며, 공무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.
-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법 제 32조, 동법 시행령 제 25조, 별정 우체국법 제 31조, 동법 시행령 제 43조,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 3호, 민사 집행법 시행령 제 2조(이하 “관련 법”이라 합니다)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한다. 단,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

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대상금액 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한다.

- ④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된다.

제8조 【거래제한】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,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.
-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, 전자통장 약정, 양도, 질권설정, 담보제공, 상계, 지급정지가 불가하다.
- ③ 이 예금은 인터넷,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,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ostbank.go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.1%p,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.2%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-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ostbank.go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갈음한다.

제10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(결산일)은 매년 3, 6,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.
- ② 이자 계산기간(결산기간)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)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제11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(지급일)에 통장으로 입금된다.

제12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당월에 공무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 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,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.
1. 전자금융(인터넷 · 폰 ·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,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(단,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) 수수료는 제외)
 2.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
 3.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
 4.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
-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에 게시한다.

제13조 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